

장애인 권리 선언

-1975년 12월 9일 채택된 UN뉴욕 총회 결의문 3447(30차)

총회(The General Assembly)는 장애인 권리를 선언하고 이것이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통된 기초와 준거 틀로 사용되도록 국가적·국제적 노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1.'장애인(disabled person)'이라 함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면에서 선천적이나 후천적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개인적 혹은 사회적 생활을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장애인들은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3.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존중받을 권리를 타고 난다.

4.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권을 가진다.

5. 장애인들은 자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책을 활용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6. 장애인들은 필요한 모든 치료, 서비스, 교육, 훈련, 기술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들은 경제적·사회적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8. 장애인들은 국가계획에서 고려될 특별 요구를 가진다.

9. 장애인들은 가족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10.장애인들은 착취와 규제와 처우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11. 장애인들은 적절한 법적 원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2. 장애인들과 그드르이 가족들 및 지역 사회에게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를 충분히 알릴 수 있어야 한다.